



남북 경협 지원 기구의 설치 방안

임강택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 통일 여건과 통일 문제의 인식

김영봉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북한 '변화론' 쟁점 분석: 대남 혁명 전략과 경제 관리 방식

진희관 / 평화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북 경험 지원 기구의 설치 방안

임강택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험 확대 의지가 확고하고 경제난 극복에 고심하고 있는 북한의 처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북한의 정부 당국자간 협상 거부 방침으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북한과 비정부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설득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험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 경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북한측과 관련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호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험 지원 기구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결정권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측에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정경 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특히, 북한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경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만을 논의함으로써 정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을 조정·집행하고, 이 기구는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경제 교류·협력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기구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머리말

1998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하여 격감한 남북 교역은 1999년에는 국내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7년 수준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먼저 대북 지원 물자와 금강산 관광 사업 물자 등의 명목으로 북으로 반출된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 교역액의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¹⁾ 따라서 실질 교역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7년의 2억 5,309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한 경제 협력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 교역에서 위탁 가공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품목도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위탁 가공 교역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1992년 4개 업체에서 1999년 10월 현재 130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교역 품목도 1992년 9개에서 169개로 늘어났다. 실질 교역의 실적이 다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역의

질적 개선과 저변 확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²⁾ 남북 경협이 시작되어 1990년 이후 남북 경협 관련 피해 사례가 신고된 것만 해도 50건이 넘고 있으며, 지금의 경협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측이 당국자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남북 경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남북 경협 지원 기구의 필요성

민간 차원의 대화 통로 개설

북한측의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으로 인한 공식적인 대북 창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창구 개설 노력과 함께 비정부 기구를 통한 대화 창구 개설을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공식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을 북측과

1) 1999년 10월까지의 교역 총액은 2억 8,768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거래성 물자는 경수로 사업 물자(1,207만 달러), 대북 지원(4,179만 달러), KEDO 중유(3,951만 달러), 금강산 관광 사업 물자(3,731만 달러), 협력 사업 물자(620만 달러)로 총 1억 3,688만 달러이며 이는 전체의 47.6%에 해당한다.

2) 「경향신문」(1999. 12.14) 사설.

협의를 할 수 있는 비정부 기구를 설치하여, 앞에서 언급한 경험 관련 사고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경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통일 이전의 구서독과 지금의 대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서독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 반관반민 성격의 '상공신탁관리소'를 설치하여 구동독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대만도 '海峽交流基金會(이하 海基會로 약칭)'를 설립하여 중국 본토와의 경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대만의 海基會는 정부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측의 파트너인 '海峽兩岸關係協會(이하 海峽會로 약칭)'와 접촉 라인을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북 사업 지원

남북 경험 활성화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경험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통일부가 대북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제한된 인력으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남북 경험 사업을 실효성있게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 시키고 동시에, 남북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위임 하에 일정 부분의 재량권을 가지고 남북 경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기업에 의해서 대북 사업이 주도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 경험 확대를 위한 경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대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는 대북 경험 사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크고 남북간 경험 확대에 따르는 파생 효과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북 경험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북한측의 낮은 신뢰도 문제와 자금력·정보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도 민간 기구인 海基會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륙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海基會는 정부로부터 중국 본토와의 교류 관련 업무를 대폭 위임받

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민간 기구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온 구서독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남북 경협 지원 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서독과 대만의 사례

구서독의 사례

구 동서독 교역에서 구서독측 협상 당사자는 '상공신탁관리소'(Treuhandstelle für Industrie und Handel)였으며 구동독측은 대외무역성(Ministerium für Außenhandel)이었다. 구서독의 경우 1981년까지는 그 명칭이 '지역간 교역신탁관리소'(Treuhandstelle für den Interzonenhandel)였으며, 구동독의 경우에는 60년대 중반까지 대내외무역성(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이 담당하였다.

상공신탁관리소는 연방경제성 산하의 민간 단체인 독일상공회의소 안에 설치되었으며, 소재지는 서베를린이었다. 또한 이 기관은 구동독 국가 기관과의 직접 교류를 피한다는 구서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제성 내

에서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제조업국이 관할하였다.

상공신탁관리소는 구서독 정부와 서베를린 시의회로부터 구 동서독 교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서독측의 이익을 대표하여 구동독측의 경제 부처와 항시적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합의에 도달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상공신탁관리소'는 양독간의 교역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동독의 대외무역성과 협상을 벌였으며, 내독 교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동독측과의 협상을 벌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서독의 민간 기업들의 對구동독 거래를 지원하는 일과, 구 동서독 교역이 주어진 법적·제도적 기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내독 교역이 이해 충돌없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공신탁관리소 소장과 구동독의 대외무역성 대표가 1~2 주에 한번씩 회동하여 현안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의 사례

1987년 11월 대만 정부의 대륙 친척 방문 허용 조치로 양안간 인적 교류는 물론 교역과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신변 안전 보장·

대륙 투자 기업에 대한 편의 보장·어업 분쟁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자 대만 정부는 대화 창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국제 사회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대만 정부는 대륙의 三通(通商, 通郵, 通航) 공세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삼불(不接觸, 不談判, 不協商)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능한 방식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에 대만 정부가 4,900만 달러를, 민간 기업이 1,9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비영리 재단 법인 형태의 海基會를 설립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海基會의 접촉 창구 역할을 담당할 海峽會를 설립함으로써 양안간의 대화 통로가 개설되었다.

대만의 海基會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차원의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海基會 회의에는 대륙위원회 관리가 파견되며 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대륙위원회에 보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공무원이 海基會에 파견되었다.

海基會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양안 주민의 상호 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심사 및 관련 서류의 발급, ②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 관계 증명 및 소송 서류의 사실 확인, 피의자 및 범법자의 송환 처리,

③ 중국내 경제 무역 관련 정보 수집·배포, 간접 무역 및 투자 업무 조정·통제, 분쟁 처리, ④ 문화 교류 지원, ⑤ 대만 주민의 중국내 체류 기간중 합법적인 권익 보장 지원, ⑥ 인적 교류에 관한 자문, ⑦ 정부의 위탁 업무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海基會의 조직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이외에 주요 실무 부서로 비서처, 문화사무처, 경제무역사무처, 법률사무처, 여행사무처, 종합사무처 등이 있으며, 필요시 중국 본토와 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海基會의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며, 이사장·부이사장(1~2명)·이사(43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海基會' 기금 운용, 비서장의 임면, 주요 정책 방향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비서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海基會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된다. 비서장은 1~3인의 부비서장을 제청하여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문화사무처는 양안의 교육·문화·예술·학술·과학 기술·뉴스·체육의 교류에 관한 사항과 대륙의 교육·문화 정보 자료 수집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항 및 기타 문화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

경제무역사무처는 양안의 무역 교류와 무역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대륙에서의 무역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대륙의 무역 정보 자료 수집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항 및 기타 무역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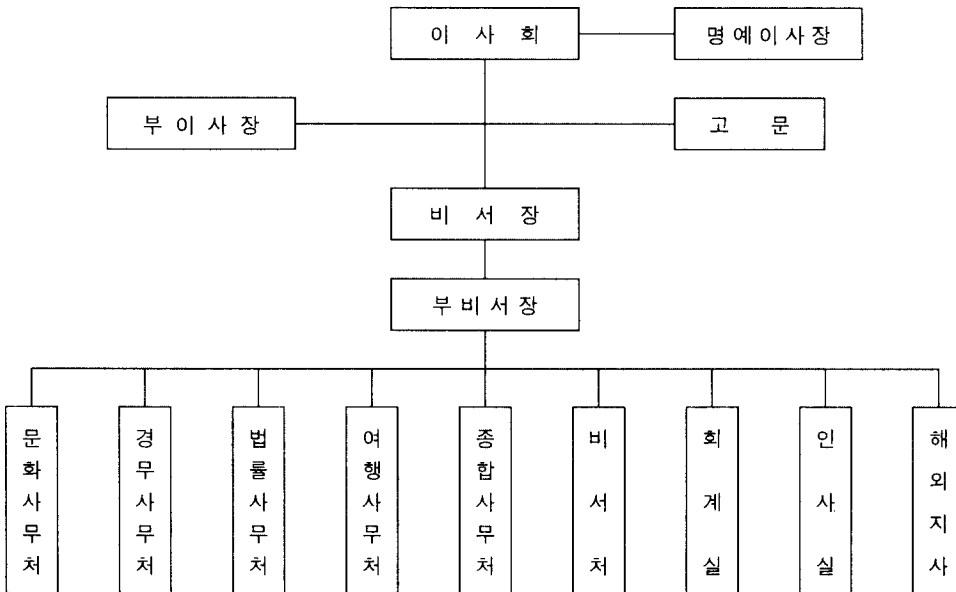
법률사무처는 양안의 사법·행정 문서 검증 및 신분 증명에 관한 사항, 양안의 민사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양안간의 문서 송달, 수탁 조사 및 기타 사법적 협조에 관한 사항, 대륙의 관계 법규·판례 수집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항 및 기타 법률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

여행사무처는 양안 주민의 출입 관련 협조 사항, 양안의 친지 방문 여행에 대한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대륙에 체류하는 대만 주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대륙 여행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항 및 기타 여행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

종합사무처는 대륙 자료의 수집·처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출판·발행, 교육 훈련, 기획 연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뉴스 처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컴퓨터시스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의 위탁 사항 및 기타 종합 사무 관련 사항들을 처리한다.

비서처는 의사 및 업무 통제에 관한 사항,

〈표 1〉 海峽交流基金會 조직표



서무·출납에 관한 사항, 문서·官印·업무 관련 서류의 관리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처리하며, 인사실과 회계실은 규정에 따라 인사 관리와 회계·통계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미화 6,8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출발한 海基會의 운영 자금은 운용 기금의 이자 소득, 위탁받은 정부 업무의 대행 수입, 정부 및 민간의 기부금, 각종 서비스 제공 수수료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대만의 성공 요인

대만의 海基會는 중국과의 비정부 접촉 창구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배경으로 몇가지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상호간에 민간 대리 기구와 같은 중개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양안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타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대치 구도 하에서 당국간 접촉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상호간에 적절한 비정부 중개 기관을 통한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둘째,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한 점이다. 1993년 3월

대만의 海基會 회장인 구첸푸와 대륙의 海峽會 회장인 왕다오한간의 '구-왕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에서 양측은 협상을 양안간의 경제 실리 추구를 위한 의제에만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4월 본 회담에서 대륙의 海峽會측이 三通(通商·通郵·通航)을 제안하자 海基會는 협상의 기본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협상 진전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치 관련 의제를 철저히 배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은 총통 자문 기구인 '국가통일위원회'와 행정원 대륙위원회 그리고 민간 기관인 海基會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륙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통일 전략을 기획하는 국가통일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륙 정책을 조정·집행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海基會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海基會는 정부를 대신한 대륙 접촉 창구로서 양안간 인적·물적 교류에 수반된 민원 업무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고된 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협상력이 있는 지도 인사를 영입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海基會 구첸푸 회장은 대만의 경제 단체인 '中華民國工商協議

을 30년 이상 꾸려온 경제인으로 정치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한간 경제 협력 기구 논의 사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에 경제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북한측에 두 차례 제의한 바 있으며, 5 차례에 걸친 남북경제회담을 통해서 이를 논의한 사례가 있다.

먼저 대통령의 '6·23선언' 5주년 특별담화(1978. 6.23)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교역·기술 협력·자본 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간의 민간 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을 제의한 적이 있다. 두번째는 신병현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남북한 물자 교역과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하

는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1984. 10.12)하면서,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 협력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 기구 설치 문제 논의 과정

북한의 남북경제회담 개최 수락으로 1984년 11월 15일 1차회담이 개최된 후 1985년 11월 20일 5차회담에 이르기까지 관문점에서 남북경제회담이 진행되었다.

1차남북경제회담(1984. 11.15)에서 우리측은 남북간의 물자 교역 및 경제 협력 문제를 협의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관계 당국 및 경제 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도 공동 협력

〈표 2〉 북한측의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성 및 조직	· 위원장(부총리) 및 부위원장(장관급) 각 1명, 위원 7명(장·차관급)과 사무장 1명(차관급) · 각 5명씩으로 구성된 7개 분과위원회 설치: 자원 개발, 공업·기술, 농업, 수산, 상품 교류, 운수·체신, 금융·재정
기능	· 남북간 경제 협력과 교류의 대상 및 규모를 협의·결정하고, 同협력과 교류의 기본 형식 및 방법을 결정하며, 협력과 교류에 관련된 통일적인 기획을 협의 · 쌍방 합의 사항과 토의 결정된 사항을 보장하고, 쌍방간에 제기된 분쟁을 협의·조정 · 분과위원회를 지도하고 기타 문제를 협의·결정
운영	· 공동위는 분기별로 한번씩 평양·서울에서 개최하며, 분과위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공동위 제1차회의는 9월 평양에서 개최 · 공동위원회 운영 세칙은 별도 협의하여 제정

기구로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성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2차회담(1985. 5.17)에서 북한측은 쌍방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3차회담(1985. 6.20)에서 우리측은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취지에서 2차회담에서의 북한측 입장을 대폭 수용한 「남북간 물자 교역 및 경제 협력 촉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

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다.

4차회담(1985. 9.18)에서는 3차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을 기초로 우리측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합의서(안)를 제시하였으나, 남북한간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없이 종료되었다.

5차회담(1985. 11.20)에서도 남북한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으

〈표 3〉 우리측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성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회는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부장)급 부위원장 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 5명(장·차관급)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 안에 물자교역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별도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 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 설치
공동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물자 교역 및 경제 협력 사업(이하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 사항을 성실 이행 ·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의 확대·발전 방안을 협의·결정하며, 그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약정 체결 ·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협의·조정 · 교역 물품의 안전 수송 및 관계자의 자유 왕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 · 물자 교역 및 경제 협력 사업과 관련한 상호 인사 왕래,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촉진·장려 · 기타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
분과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회에서 합의 또는 위임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결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 · 남북 교역 및 협력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약정안을 작성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 · 소관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협의·해결하고 필요시 이를 공동위원회에 제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개최 가능 · 공동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합의에 따라 공개 · 회의에 쌍방의 사업 당사자·공동 사무국 국장 및 사무원 참가 가능 · 기타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협의하여 결정

나 합의서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1986년 1월 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경제회담은 회담일을 이틀 앞둔 1월 20일, 북한측이 우리의 '팀스피리트 1986' 군사 훈련 실시 계획을 구실로 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동년 7월 16일 북한이 경제회담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후속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급 경협 지원 기구 설치 방안

결국 대만이나 구서독은 半官半民 형태의 기구를 통해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정치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 협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부간의 협상에 주력해왔으나 번번이 북한측의 우리 정부 배제 전략과 정치적인 변수들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목표인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달성하고, 정경 분리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半官半民 형태의 대북 지원 및 협상 창구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작업

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구의 성격

먼저 이 기구는 半官半民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경협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북한측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기구는 구서독의 경우처럼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되며 통일부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구의 설립 목적은 ① 경제적·기술적 지원 확대를 통한 대북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남북 경협의 활성화와 함께, ②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서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한의 공동 이익 실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구의 기능은 ① 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북 창구 및 대북 협상 통로 역할 수행, ② 대북 경협 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③ 대북 경협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간의 과다 경쟁 및 중복 투자 조정, ④ 대북 경협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근거하여 통일부 등의 관련 업무를 위임받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조직 구성

조직 구성의 기본 방향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를 띤 민간 단체 성격을 유지하되, 이사회는 경제계 인사와 정부의 관련 기관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학계 및 연구 기관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구의 대표격인 이사장은 비정치적인 인사 가운데서 협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대북 사업 관련 협상에 우리측의 대표자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총장은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여 실무 분야의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무 부서는 6~8 개 실로 구성하고 북경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대북 경험 관련 협상 및 상담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시 부서별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조직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³⁾

먼저 이사회는 주요 안건을 결정하며,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임명 및 기금 운용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경제 협력과

관련된 대북 협상에서 우리측의 대표 자격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실무 부서를 지휘·관리한다.

투자상담 및 법률자문실은 대북 교역 및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북한 내의 사업 여건, 북한측과의 교역·투자 상담 및 계약 체결 관련 자문의 역할을 비롯하여, 무역 분쟁 조정에 관한 자문, 북한의 관련 법규·판례 수집 및 자문, 기타 법률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금지원 및 기금운영실은 대북 교역 및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접수받으며 자금 지원 여부의 판단 및 지원의 성격·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 확충 역할을 담당한다.

협상준비실은 대북 협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협상 안건을 조정하여 협상 대책을 수립한다.

사업기획실은 대북 투자 사업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연구, 기업간의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 조정, 대외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지원실은 문서의 관리·출납, 인사 관리와 회계 업무 등의 처리를 통해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며 회원사를 관리한다.

정보자료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대북 투

3)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조직체계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 및 이용, 출판·발행,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한다.

해외·북한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북한 지역이나 해외(북경 등)에 설치함으로써 남북 경협 관련 상담 및 협상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된다.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기구의 설립을 위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대북 사업 관련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예산 배정을 통하여 마련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가칭 '통일채권')을 발행하여 출연금을 마련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주식' 공모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기구의 운용 자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된 기금의 이자 수입, 기업·민간 단체·일반 국민의 기부금, 대북 교역·투자에 지원되는 자금의 이자 수입, 회원사의 회비, 상담·자문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만약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 복권(가칭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우리 정부의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이 추진된 지 11년이 경과하면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다. 비록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현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협 확대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간의 협력 강화는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남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한이 협력 확대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필요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북한의 정부 당국자간 협상 거부 방침으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북한과 비정부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설득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협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북 경제 협

력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서독과 대만이 半官半民 형태의 기구를 설치하여 상대방과 협상도 하고 각종 교류 협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북 경협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북한측과 관련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몇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북한측의 반응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 상대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해온 북한이 경협 관련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쉽게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비공식 대화 창구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경협 지원 기구 설립 과정에서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구에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결정권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측에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대북 협상력을 갖춘 비정치적 인사를 영입하는 일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 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특히, 북한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경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만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세워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 경협이 제약을 받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을 조정·집행하고 이 기구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한다. 경협 지원 기구는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경제 교류 협력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협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측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셋째, 기구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북 경협 사업을 지원할 민간급 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서해안공단 사업에 대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를 대신해서 필요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92**